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선방안

사회예산분석과 허아름 분석관

사업 개요 및 운영 체계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2026년 기준 예산은 5,978억 원으로, 260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여, 12만 6천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임
- 서비스 유형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함
 - 2026년 기준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으로, 정부지원금(10~85% 차등 적용) 제외 부분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
- 사업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광역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지원센터와 중앙지원센터는 아이돌봄사 수급관리, 교육 및 사업 운영 지원 등 서비스 제공 기반을 담당

[표 1]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아이돌봄사가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시각지대를 해소
법적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사업기간	'07년~계속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연간 960시간 지원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 등은 연간 1,080시간까지 확대('26~) - (종일제) 36개월 이하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연간 2,400시간) 지원
운영체계	- (성평등가족부) 사업 총괄 및 정책 수립 - (중앙지원센터) 사업 운영지원 및 교육·정보시스템 관리 - (광역지원센터) 지역 사업관리 및 아이돌봄사 수급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채용·배치 및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형~마형)에 따라 차등 지원 (’26년 기준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대상 정부지원 10~85%
사업규모	(’26년 기준) 사업수행기관 260개소, 서비스 이용가구 126,000가구
예산	(’26년 기준) 5,977억 7,900만 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수요에 맞춘
안정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 서비스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연계율은 하락하고 대기 기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편차 존재
 - 최근 5년간(2021-2025) 서비스 신청은 2.3배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연계율은 91.9%에서 86.9%로 하락하고 평균 대기일수도 19.0일에서 39.4일로 증가함
 - 지역별로 볼 때도 2025년 기준 대기일수가 경북은 60.9일, 충남은 23.4일로 서비스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

[표 2] 최근 5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연계 및 대기 현황

(단위: 가구, %, 일)

구분	연계 현황			대기 현황	
	신청가구	연계가구	연계율	대기가구 ¹⁾	평균 대기일수
2021	78,118	71,789	91.9	6,809	19.0
2022	86,465	78,212	90.5	14,745	27.8
2023	122,729	86,100	70.2	13,031	33.0
2024	139,508	118,126	84.7	9,519	32.8
2025	183,794	159,804	86.9	11,645	39.4

주: 1) (대기가구 수) 해당 연도말 기준 정기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구 수
자료: 성평등가족부

▪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필요

- 최근 영아종일제보다 시간제 서비스와 단기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
- 단기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서비스제공기관이 배정하던 것을 '24년 3월부터 아이돌봄 시스템에서 자동 배정하도록 하면서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영아종일제의 경우 2025년 계획 2,500가구 대비 실적이 793가구에 그치는 등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향후 변화하는 서비스 이용 양상에 대응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안정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표 3] 2021~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가구)

구분	합계	정기서비스				단기서비스	기관연계
		시간제		질병감염	영아종일제		
		기본형	종합형				
2021	71,789	52,989	2,181	2,284	2,617	10,462	1,256
2022	78,212	55,543	1,425	4,170	2,760	12,939	1,375
2023	86,100	58,908	1,616	5,991	1,890	16,289	1,406
2024	118,126	61,960	1,654	6,407	1,155	45,606	1,344
2025	159,804	66,694	1,701	6,986	793	82,240	1,390

주: 1. 정기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대상 서비스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1개월 단위)
 - (시간제 기본형) 놀이활동, 등하원 보조 등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을 제공
 - (시간제 종합형) 기본형의 돌봄 제공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 추가 제공
 - (질병감염) 법정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병원 동행 등 제공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서비스로 1회 3시간 이상 신청
 2. 단기서비스: 정기서비스 이외에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돌봄 활동 제공
 3. 기관연계: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봐야 하는 경우 아이돌봄사를 보조인력으로 활용, 안전한 돌봄 제공
 자료: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사 운영 기반 강화 필요

▪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비해 활동 아이돌봄사 확보는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인 인력 운영 기반 마련 필요

-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인원은 2024년을 제외하고 예산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활동 아이돌봄사 수도 매년 예산상 목표에 미달
- 2025년의 경우 교육인원 대비 활동 아이돌봄사 증원 비율은 16.4%로 전년(21.7%) 보다 감소하는 등 양성교육이 실제 활동인력 확대에 이어지는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

[표 4]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인원 및 활동 아이돌봄사 현황

(단위: 명, %)

연도	양성교육인원			활동 아이돌봄사				
	예산상 목표 (A)	실제교육 인원 (B)	달성률 (B/A)	예산상 목표 (C)	실제 인원 (D)	달성률 (D/C)	전년대비 증감 (E)	교육인원 대비 증원비율 (E/B)
2020	4,500	2,403	53.4	34,500	24,469	70.9	△208	△8.7
2021	10,300	3,937	38.2	35,000	25,917	74.0	1,448	36.8
2022	5,000	3,544	70.9	33,000	26,675	80.8	758	21.4
2023	4,500	3,946	87.7	29,090	28,071	96.5	1,396	35.4
2024	6,000	8,901	148.4	34,908	29,635	84.9	1,564	21.7
2025	-	12,736	-	36,000 ¹⁾	31,718	88.1	2,083	16.4

주: 1) 2025년은 예산상 목표 인원수를 설정하지 않아, 배상보험료 예산편성 기준으로 대체

자료: 성평등가족부

▪ 안정적인 아이돌봄사 인력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외)에 따르면 아이돌봄사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급여 인상(38.6%)’, ‘서비스 이용가정 대상 교육 강화(16.1%)’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26년 아이돌봄사의 돌봄수당은 시간당 11,120원으로 최저임금의 107.8% 수준에 그침
- 양성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개편함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26. 4. 23.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사 채용 주체가 광역지원 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 운영체계가 개편됨

[표 5]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전·후 전달체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중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	좌동
광역 (시·도)	시·도지사는 아이돌봄광역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광역 센터에서 아이돌봄사를 채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 그 외 아이돌봄사 수급 조정 등 업무	시·도지사는 아이돌봄광역센터를 지정·운영 아이돌봄사 수급 조정 등 업무 수행
기초 (시·군·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 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은 광역센터로부터 아이돌봄사를 배치받아 돌봄서비스 제공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지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배치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자료: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사업 운영체계 내실화 필요

▪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역할 재정립 필요

- 광역지원센터는 전달체계 개편에 맞추어 지역별 아이돌봄사 수급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및 서비스 품질관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필요

- 상기 법률 개정에 따라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봄사에 대한 국가자격 부여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등록·관리 체계가 마련

[표 6]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명칭	구분	관리	명칭	구분	관리
인력	아이 돌봄사	- 인·적성 검사, 양성교육 120h, 보수교육 16h - 범죄경력 조회, 건강진단, 위해 질병자 활동금지	아이 돌봄사 (국가자격)	공공	- 인·적성 검사, 양성교육 120h ¹⁾ , 보수교육 16h - 범죄경력 조회, 건강진단, 위해 질병자 활동금지
	육아도우미	- 신원확인증명서		민간	- 범죄경력 조회, 위해 질병자 활동금지 - 신원확인증명서
기관	공공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기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민간	민간업체		등록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업체(미등록기관)	

주: 1) 표준교육과정 120시간, 단축교육과정 40시간, 직무연수과정 16시간
 자료: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2026년 4월에 이미 시행되었으나, 국가자격 관리시스템과 민간기관 등록시스템을 2026년 7월 현재 구축 중으로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
- 관련 시스템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구축할 필요
- 시스템이 부재한 현재는 임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 중인데,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